

September 19, 2016

FATCA 협정 국회 통과 및 한미간 금융정보 교환 시행

국회는 2016. 9.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위 협정은 이른바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하 “FATCA 협정”이라 합니다)으로서, 2015. 6.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FATCA 협정은 미국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자국민들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정부간 협정으로서,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각각 상대국 거주자가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FATCA 협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5. 12. 15자 뉴스레터 등 참조 => [2015. 12. 15. 뉴스레터 확인하기](#)).

FATCA 협정의 시행은 다음의 2가지 측면(금융회사 측면, 한국거주자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FATCA 협정은 국내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국인(특히 협정에서는 ‘특정미국인’이라고 합니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식별하여 해당 계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계좌 잔액 및 해당 계좌로 지급된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의 정보를 우리 국세청을 경유하여 미국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또는 해태하는 경우에는 비참여금융회사로 간주되어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로서는 FATCA 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러한 의무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행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5. 12. 24자 뉴스레터 등 참조 => [2015. 12. 24. 뉴스레터 확인하기](#)).

FATCA 협정에 따른 한미간 정보교환은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비준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시기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로서는 FATCA 협정의 실제적인 시행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FATCA 협정 발효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개설된 한국 거주자 보유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곧 한국의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의 역외금융재산 및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미국 등 해외에 역외재산 및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자산가나 법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신고

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당수의 음성적인 역외재산을 양성화시킨 바 있습니다(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6. 2. 3자 뉴스레터 등 참조 => [2016. 2. 3. 뉴스레터 확인하기](#)). 이제 FATC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과 금융소득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아직 신고되지 않은 재산 및/또는 소득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신고 등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ATCA 협정의 발효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의 시발점이고, 내년부터는 OECD 회원국 등 간에 체결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2016. 8. 19. 기준 84 개국)과도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됩니다(MCAA, CRS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15. 12. 15자 뉴스레터 등 참조 => [2015. 12. 15. 뉴스레터 확인하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들과도 금융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역외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거주자(개인, 법인 등)로서는 교환되는 금융정보의 범위,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등을 숙지하여 관련 신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희 파트너 변호사	TEL. 02 316 4236	E-Mail. yhjo@shinkim.com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이종원 변호사	TEL. 02 316 1791	E-Mail. jwonlee@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